

# [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]

◆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훈련과정 탐색[직업훈련포털([www.hrd.go.kr](http://www.hrd.go.kr))]

◆ 지원내용

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	발급결정일로부터 5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비부담률 (‘20. 1. 1.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과정)	<p>◎ 직종별(참여를 희망하는 훈련과정)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5">직종평균 취업률</th> <th rowspan="2">외국어 법 정직무</th> </tr> <tr> <th>70%이상</th> <th>60~70%</th> <th>50~60%</th> <th>40~50%</th> <th>40%미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근로장려금 수급자</td> <td>7.5%</td> <td>12.5%</td> <td>17.5%</td> <td>22.5%</td> <td>27.5%</td> <td rowspan="4">50%</td> </tr> <tr> <td>일반훈련생</td> <td rowspan="2">15%</td> <td rowspan="2">25%</td> <td>35%</td> <td>45%</td> <td>55%</td> </tr> <tr> <td>국민취업지원제도Ⅱ 청년, 중장년</td> <td>30%</td> <td>40%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>국민취업지원제도Ⅰ,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</td> <td colspan="3">0%</td> <td colspan="2">2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*은 자비부담 +5%p 추가(단, 국취 1유형, 국취 2유형 중 저소득층, 특정계층은 미적용) * NCS소분류 기준: 일반사무, 회계, 의료기술지원, 음식조리, 공예, 식음료서비스, 이·미용서비스, 제과·제빵·떡제조, 문화콘텐츠제작, 임상지원</p>	구 분	직종평균 취업률					외국어 법 정직무	70%이상	60~70%	50~60%	40~50%	40%미만	근로장려금 수급자	7.5%	12.5%	17.5%	22.5%	27.5%	50%	일반훈련생	15%	25%	35%	45%	55%	국민취업지원제도Ⅱ 청년, 중장년	30%	40%	50%	국민취업지원제도Ⅰ,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	0%			20%	
구 분	직종평균 취업률					외국어 법 정직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0%이상	60~70%	50~60%	40~50%	40%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장려금 수급자	7.5%	12.5%	17.5%	22.5%	27.5%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훈련생	15%	25%	35%	45%	5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민취업지원제도Ⅱ 청년, 중장년			30%	40%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민취업지원제도Ⅰ,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	0%			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좌한도	<p>◎ 유효기간(5년간)내 300만원 훈련비 지원 ※ 국기직종·일반고 특화: 계좌한도에서 200만원 사용 간주 / K-디지털 트레이닝: 300만원 사용 간주 ↳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 개인이 부담</p> <p>◎ 다만, 아래 대상자에 한해 계좌한도 소진 이후 1회에 한하여 100~200만원 추가 지원 ① 비정규직 근로자,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연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%초과 60%이하자&lt;100만원&gt; ② 연소득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인 자&lt;200만원&gt;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훈련참여 (‘20. 1. 1.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과정)	<p>◎ 훈련시간 140시간 미만: 훈련상담 없이 HRD-Net 과정검색 후 온라인수강신청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: HRD-Net 과정검색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하여 진단상담 실시</p> <p>◎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 가능 - 동일직종(NCS 세분류 기준) 1년에 최대 3회, 동일과정 재수강 불가 ※ ‘법정직무’ 및 ‘외국어 훈련과정’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만 수강 가능 ※ ‘원격훈련’ 실업자 -&gt; 실업자 원격훈련만, 재직자 -&gt; 재직자 원격훈련만 수강 가능</p> <p>◎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‘계좌발급’ 및 ‘훈련참여’ 불가 - 만 75세 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만 75세 도래 시 훈련참여 불가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훈련장려금 (‘20. 1. 1.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과정)	<p>◎ 140시간(훈련시간)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-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: 출석일수 × 2,500원(월 5만원 한도) -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: 출석일수 × 5,800원(월 11만6천원 한도) ※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/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은 훈련시간과 관계없이 지급 ※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자는 훈련장려금 미지급, 원격훈련 참여시 훈련장려금 미지급</p> <p>◎ 자비부담 환급 불가(‘20.1.1.부터 훈련이 개시되는 과정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⚠ 주의사항 (훈련과정 수료기준인 훈련출석률 80%이상 반드시 충족·유지)

◆ 훈련에 참여하는 중, 수강포기(중도탈락) 시 횟수에 따라 계좌한도가 차감되오니 본인에게 꼭 필요한 훈련과정을 최대한 탐색하시어 신중하게 선택(결정)하셔야 합니다.(단, 부정출결, 부정발급 시 전액 차감)

1회 중도탈락	2회 중도탈락	3회 중도탈락
계좌한도 20만원 차감	계좌한도 50만원 차감	계좌한도 100만원 차감

◆ 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여야 하고, 훈련일마다 훈련 시작과 종료 시에 카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 체크를 해야하며, 대리출석 체크한 경우 관계자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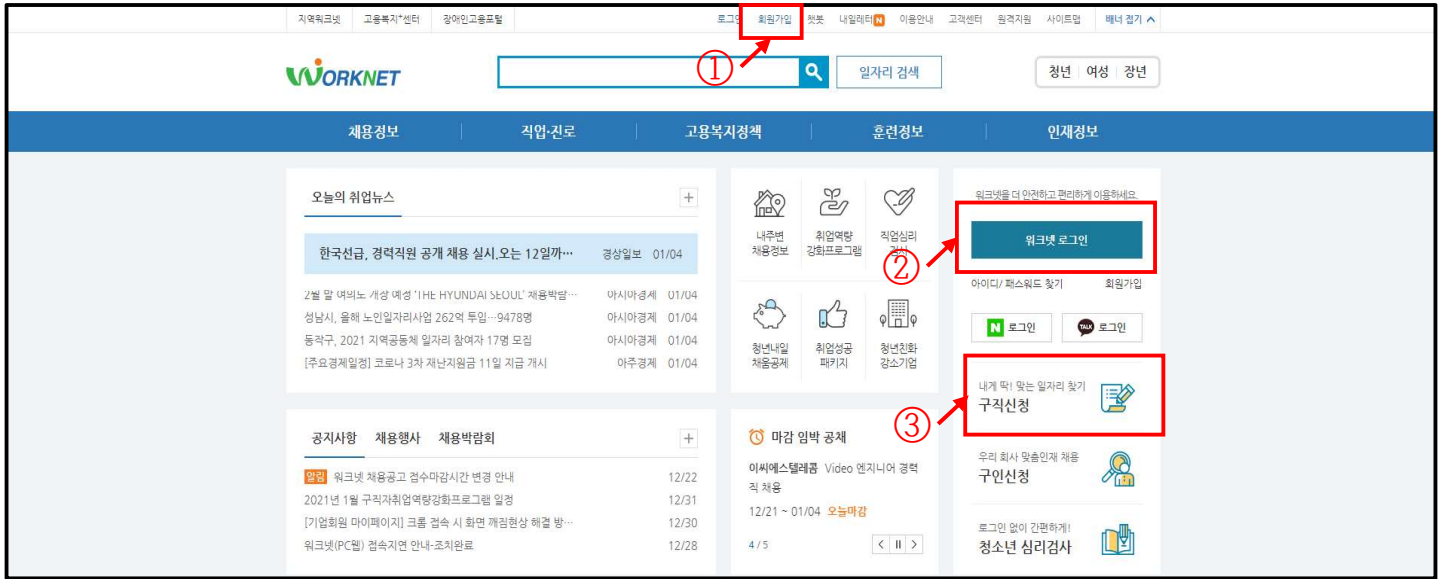
◆ 우편수령 신청자는 지정카드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, 카드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 
(신한카드: ☎ 02-6262-1919 / 농협카드: ☎ 1644-4440)

◆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고용복지\*센터로 연락 바랍니다. / Tel. 031-920-3991~4

## ◆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안내 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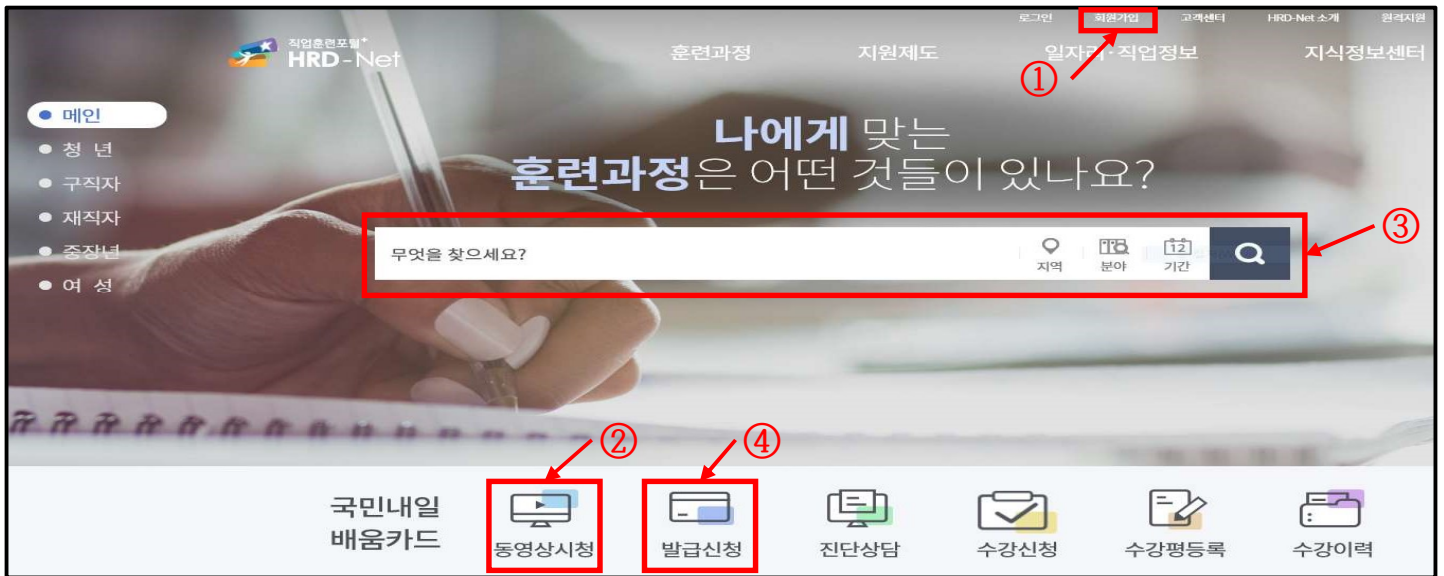
### □ 워크넷 구직신청 ([www.work.go.kr](http://www.work.go.kr), 실업자만)

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구직신청 클릭 → 이력서 작성 → 구직신청 → 구직인증번호확인



### □ 직업훈련포털 ([www.hrd.go.kr](http://www.hrd.go.kr), 실업자, 근로자 모두)

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훈련동영상 시청(30분내외 소요) → 훈련과정검색 → 발급신청 (공동인증서 등록(구 공인인증서)/공동인증서 없는 경우 PASS 본인인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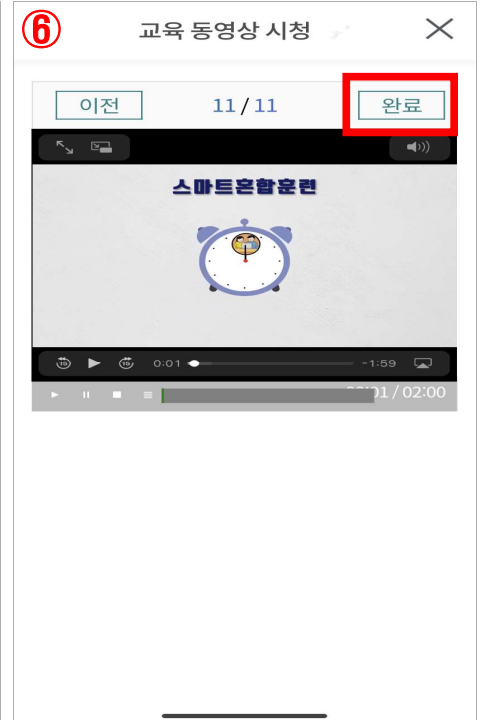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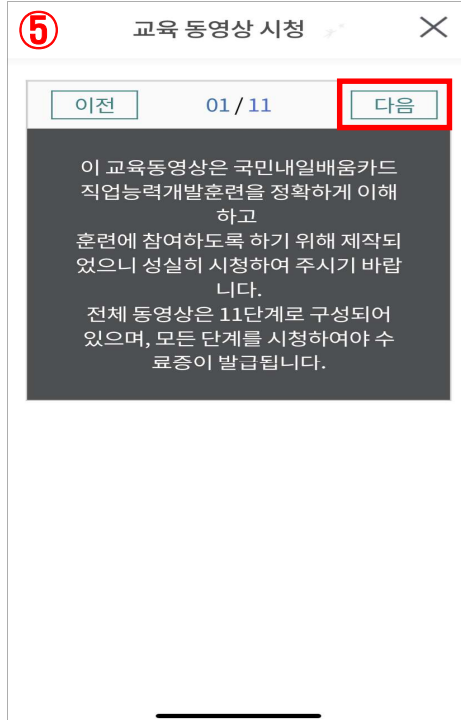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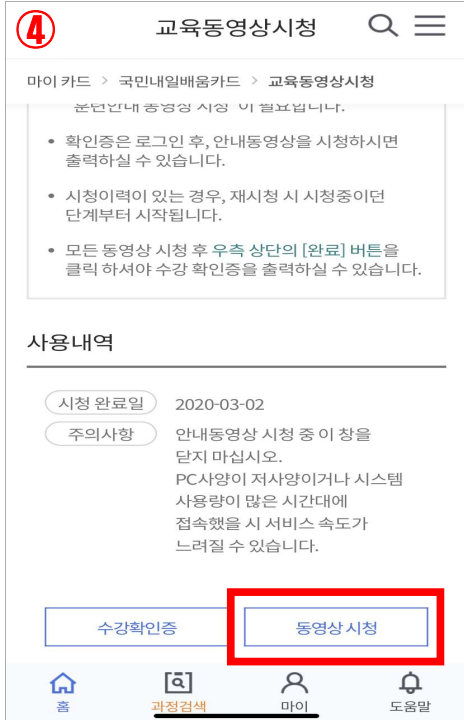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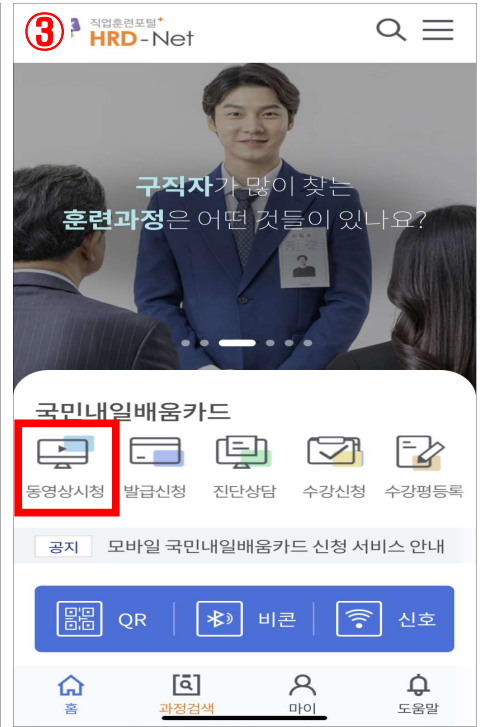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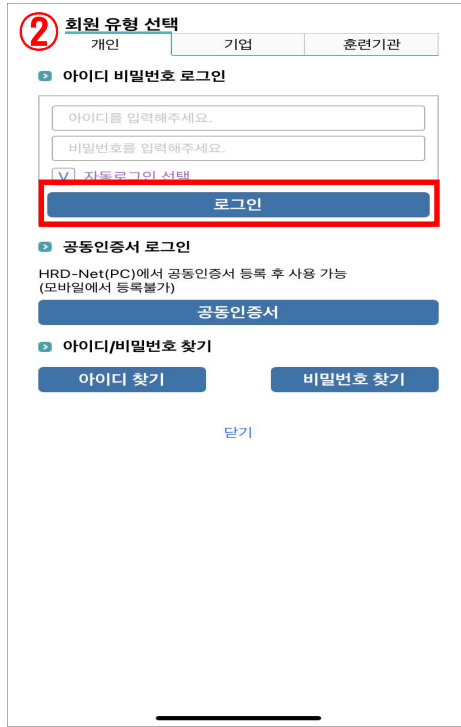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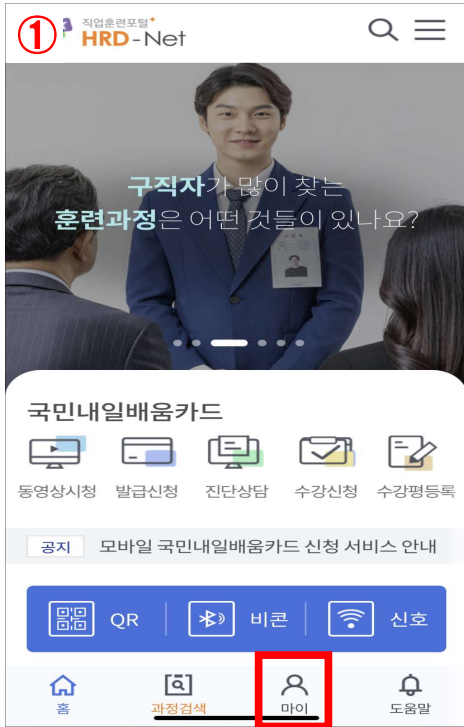


### □ 계좌(카드)발급 방식

전화발급(우편수령 신청자) <14~20일 소요>	지정카드사에서 전화 후 배송(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 * 신한카드: ☎ 02-6262-1919 / * 농협카드: ☎ 1644-4440
현장발급 <5~7일 소요>	대상자 확정 문자 받은 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증 수령 후, 지정은행에 방문에서 카드 발급(신분증 지참)
모바일발급(우편수령 신청자)	카드사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 삽입된 URL을 통해 신청

## ◆ 국민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방법 ◆

HRD-Net 앱 접속 → 하단 '마이' 터치 → 로그인 → 맨 왼쪽 '동영상시청' 터치 → 해당 페이지 동영상 모두 시청 후 '다음' 터치 → 11페이지까지 모두 시청 후 오른쪽 위 '완료' 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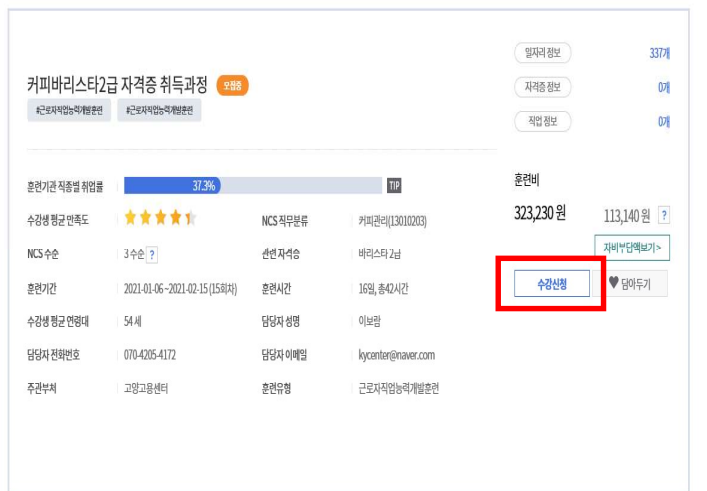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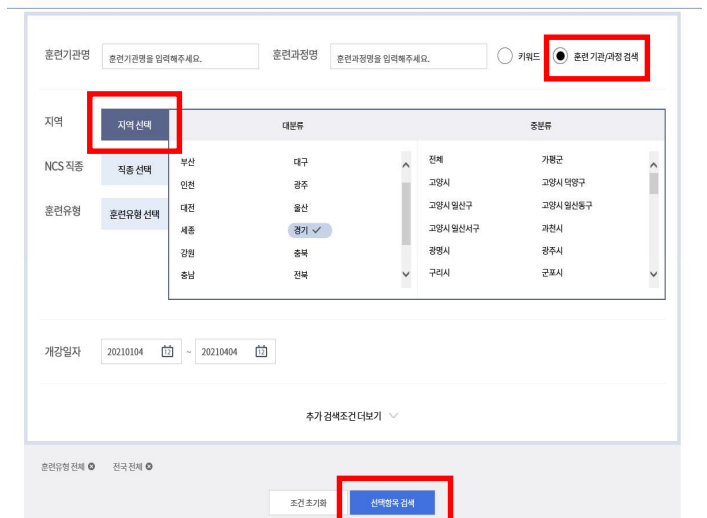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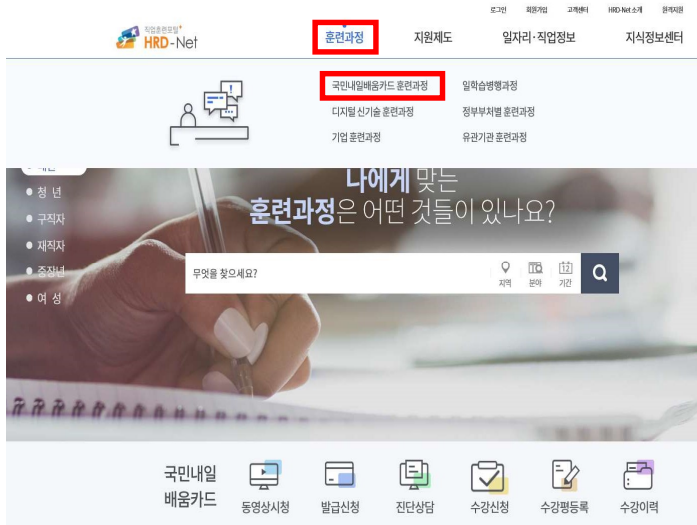


# ◆ 훈련과정 수강신청 방법 안내 ◆

직업훈련포털 로그인([www.hrd.go.kr](http://www.hrd.go.kr)) → 훈련과정 →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→ 원하는 지역, 과정 입력 후 선택항목 검색 → 수강 원하는 훈련과정명 클릭

140시간 미만 과정: 수강신청 버튼 클릭하여 수강신청

140시간 이상 과정: 수강신청 버튼 클릭하여 자가 진단 후 유선상담 신청



## ★ 자비부담액 확인 방법★

- ◎ 훈련비 아래 **자비부담액보기** 클릭 → **훈련참여 유형** 클릭 → 자비부담액 확인
- ◎ 훈련참여 유형

### 1. 근로장려금 수급자: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(매년 국세청에 신청)

### 2.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

#### 2-1.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자부담률 준용(반드시 증명 서류 제출)

-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(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자, 해당 사업장 퇴사 후 창업하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닌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우대지원 불가)
-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장 소속 및 고용위기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
- 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고용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업자
- 고용위기지역에서 신청시점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
  - ▲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최근 1년 간 과세표준(수입금액)이면서,
  - ▲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
- 출소에정자(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)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자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일반수급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불가)

### 3.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(반드시 증명 서류 제출)

#### 3-1.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자부담률 준용
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자
- 북한이탈주민

